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규 허브사업단(지원기관) 모집 공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지원할 허브사업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6호
-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25조(컨소시엄 사업의 지원기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칙 제48조(허브사업단 등)

2 공모 개요

가. 명칭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서남권 허브사업단

나. 신청대상 및 자격

- 전라권·충청권·제주권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공동훈련센터 요건에 적합한 기관

다.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별도사업 종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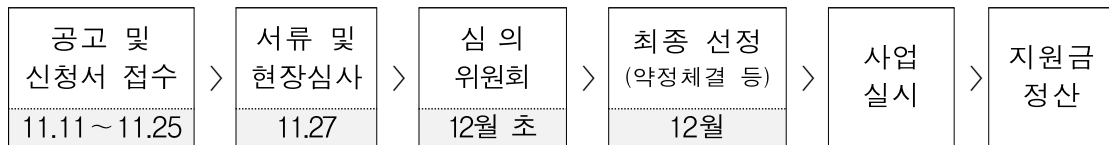
- 선정 이후 매년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을 통해 운영
 - 의무 운영기간은 6년*이며, 성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사업계획 심사 시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의무운영기간 준용

라. 주요업무

- 권역 내 운영기관 컨설팅 실시를 통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교육과정 설계 등 기술지원 수행

마. 사업 추진절차



* 기관 접수 현황 및 심사 기간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3 세부 내용

가. 공고일자 : '19.11.11.(월), 15일간

나. 공고방법 : 공단 및 컨소시엄 홈페이지 게재

- * 별도 사업설명회를 통해 허브사업단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서 작성사항 설명 등 예정
- * 사업설명회(예정) : [11.19(화), 대전], [11.20(수), 광주]

다. 허브사업단 지원내용 : 사업 운영비 연간 10억원 이내

- *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직접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원액 결정

라. 허브사업단 주요업무

- 권역 내 운영기관 컨설팅 실시를 통한 교육훈련 체계 구축, 교육과정 설계 등 기술지원 수행
- 운영기관 전담자, 교·강사를 대상으로 직무연수과정을 운영하여 역량모델링을 실시
- 신규 공동훈련센터 발굴 및 진입을 위한 컨설팅 실시
- 기업수요 맞춤형 등 신규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및 지원
- 각종 컨소시엄 사업 홍보 지원 등

마. 신청대상 및 자격

- 전라권·충청권·제주권을 포괄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기관으로 **공동훈련센터 요건에 적합한 기관**
- 컨소시엄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관으로 대학 또는 연구기관, 사업주단체 등 기관 선정 예정
- 신규 허브사업단의 운영인력은 5명 이내로 운영예정이므로 5명 이내의 인력으로 신청

< 공동훈련센터 요건 (컨소시엄 운영규정 제4조) >

제4조(공동훈련센터의 요건)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훈련센터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단체 또는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9조에 따른 기능대학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기관(비영리기관으로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 공동훈련센터에 한한다)
7.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 단, 제3호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제4호의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사업목적 상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공동훈련센터로 참여가 불가(現 일학습병행제 공동훈련센터로 참여)하므로 허브사업단(지원기관) 여건에서 제외

바. 선정방법

- **(기본방향)** 현장심사를 통해 심사 및 심사결과에 대해 컨소시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
 - 컨소시엄 심사위원 인력풀 중 3인 이내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기관 현장심사 실시
- * 접수 기관이 많은 경우 별도 서류심사(인터뷰 심사) 이후 현장심사 실시 가능
- **(현장심사)** 사업계획, 예산, 전담인력 등 인프라, 기관 관계자 인터뷰 등 실시
- **(심사기준)** 기관의 사업추진 능력, 사업계획 적정성, 사업시행 효과성 등 심사
- * 세부 심사기준 : [붙임 1] 참조

사. 선정 이후 추진사항

-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수정보완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반영
 - 컨소시엄 관련 규정상 지원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지원금 내역 등) 및 심의결과 조정사항 등 조정
- **(약정 체결)** 공단 이사장과 선정기관 대표 간 약정 체결
 - 사업계획의 실시, 지원금의 사용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컨소시엄 실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결
- **(지원금 지급)** 선정기관은 약정 체결 후 컨소시엄 사업을 위해 개설한 전용계좌개설 및 통장 사본 제출, 전용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정부지원금 지급

4 신청방법

가. 접수기간 : '19.11.11(월) ~ 11.25(월), 15일간

* 접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일 연장 등 변동 가능

나. 접수방법 : 우편, 전자메일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메일 주소 : cozy0412@hrdkorea.or.kr

다. 제출서류

○ 신청서(공문 포함)

○ '20년도 사업계획서(책자 인쇄본 5부 및 파일)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붙임 2] 참조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이 미비하거나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려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5 문의처

가. 공모 관련 문의

- 공단 컨소시엄지원부 : 052-714-8254

나.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관련 컨설팅 문의

- 컨소시엄 중부권 허브사업단 : 041-580-4662

- 컨소시엄 남부권 허브사업단 : 053-810-1561

허브사업단 선정 심사기준(채점표)

신청기관명	
-------	--

심사항목	배점	세부 심사지표	등 급					특점
			미흡	부족	보통	양호	우수	
계	100							
1. 사업추진 능력(35점)	10	1.1 인적자원의 사업추진 능력(전공분야, 경력 등)	2	4	6	8	10	
	10	1.2 활용 가능한 물적자원(시설 등)	2	4	6	8	10	
	10	1.3 직업훈련 사업 추진실적(컨소시엄 사업 또는 유사사업 등)	2	4	6	8	10	
	5	1.4 재정현황	1	2	3	4	5	
2. 사업계획 적정성(50점)	20	2.1 권역내 운영기관 컨설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4	8	12	16	20	
	15	2.2 직무연수과정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3	6	9	12	15	
	10	2.3 컨소시엄 사업 홍보계획	2	4	6	8	10	
	5	2.4 기타 추진계획	1	2	3	4	5	
3. 사업시행 효과성(15점)	10	3.1 운영기관 컨설팅의 실적·성과 목표 지표 및 목표치의 합리성	2	4	6	8	10	
	5	3.2 직무연수과정 운영의 실적·성과 목표 지표 및 목표치의 합리성	1	2	3	4	5	

심사의견	
------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권역별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2019. 10.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1. 제출 서류

가. 공문 및 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 5부(A4용지 세로, 양면 인쇄 또는 복사)

다. 사업계획서 파일

2. 사업계획서 규격

- 가급적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본문 15포인트, 장평 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개조식 작성
 - 용지여백 :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5, 오른쪽 25, 머리말 10, 꼬리말 10
- 신청서 분량은 제한 없음

3.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서류심사 주요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상세히 작성
- 지원금 요구내역서는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하여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 출처 명시
 - 해당 면 본문에 “※”로 인용출처 명시
- 반드시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
-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양면 인쇄를 하되, 불가피시 단면도 가능
-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사업계획서의 해당 부분에 기재(제출하기 어려운 증빙자료는 현장심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

- 형식요건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경미한 오류 시 제출기한까지 수정하여 제출 가능
- 현장심사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문서를 통하여 통보할 예정임

4. 제출처

- 접수장소 : (우 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지원부
- 문의사항 : 052-714-8254

5. 주요 심사 평가항목

- 기관의 사업추진 능력
 - 사업추진 의지
 - 사업추진(인적자원·물적자원·재정현황) 역량
 - 그간 직업훈련 관련 실적(컨소시엄 또는 유사훈련 사업 등)
 -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추진 전략, 사업운영 기본방향
 - 사업수행 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
 - 사업시행 효과성
 - 실적·목표지표 설정의 합리성
- * 사업수행 계획 및 시행 효과성 등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내역인 권역내 운영기관 컨설팅, 전담자 직무연수, 홍보, 기타 사항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작성

6. 신청서 작성양식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 신청서					
신청기관 유형			기업형, 대학형, 연구기관 등 기재		
신청 기관 현황	신 청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대 표 자	직 위		성 명	
	사업책임자	직 위		성 명	
	실 무 담당자	직 위		성 명	
		전 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일 신청기관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 1부					

7.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표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규 허브사업단 사업계획서

2019. n

신 청 기 관 명

목 차

I . 사업추진 능력

1. 인적자원 역량
2. 물적자원 역량
3. 그간의 직업훈련 사업 실적 및 성과
4. 재정현황

II .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목표 및 전략
2. 운영기관 컨설팅 세부 추진계획
3. 직무연수과정 운영 세부 추진계획
4. 기 타

III . 사업계획의 효과성

1. 운영기관 컨설팅
2. 직무연수과정 운영

IV . 지원금 요구내역서

1. 연도별 예산 계획
2.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기관 소개

※ 심사위원이 해당 운영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기관에 대한 현황 등을 자유롭게 기술(주력 사업 또는 훈련직종, 근로자수, 지리적 여건, 주변 환경 등)

I. 사업추진 능력

1. 인적자원 역량

1.1 전담조직 및 참여인력(전공분야, 경력 등)

○

※ 참여인력의 컨소시엄 사업 전담자 경력(훈련사업 운영) 외에도 HRD컨설팅 또는 코칭 경력, 훈련과정 계획 및 교수설계 역량, 학위·전공학과 등 상세 기술(증빙자료 현장심사 시 제시)

2. 물적자원 역량

2.1 시설 현황

○ 시설 소재지(주소)

○ 시설 현황

시 설 명	사용면적(㎡)	활용용도	비 고
강의실	140		
회의실			
·			
·			

※ 컨소시엄 허브사업 활용가능 공간

2.2 주요 핵심역량(컨설팅 기법 등)

○

3. 그간의 직업훈련 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

3.1 추진실적

○

3.2 사업성과

○

※ 선정연도에서 현재까지의 컨소시엄 훈련실적, 우수사례 수상내역 등

4. 재정현황

○

※ 최근 3개년도 자본금 및 자산규모 등(증빙자료 첨부)

II. 사업계획의 적정성

1. 사업목표 및 전략

1.1 사업목표

○

1.2 사업전략

○

2. 운영기관 컨설팅 세부 추진계획

○

3. 직무연수과정 운영 세부 추진계획

○

4. 컨소시엄 사업 홍보계획

○

5. 기타사항

○

※ 필요 시 자유롭게 상세내용 기술

Ⅲ. 사업계획의 효과성

1. 운영기관 컨설팅

○

2. 직무연수과정 운영

○

※ 실적·성과 목표,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상세내용 기술

IV. 지원금 요구내역서

1. 예산 신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목표량	예산	비 고
계			
1. 직접사업비			
1.1 컨설팅	00개 기관		
1.1.1			
1.2			
1.2.1			
2. 인건비(전담인력 0명)	-		1인당 5천만원 (대웅투자기관 1인당 4천만원)
3. 사업운영경비			
4. 일반관리비			

2. 지원금 신청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목표량	예산	비 고
계			
2. 직접사업비			
1.1 컨설팅	00개 기관		
- 외부전문가 수당			
- 간담회비			
- 시설사용료			
1.1.1			
1.2			
1.2.1			
2. 인건비(전담인력 0명)	-		1인당 5천만원 (대웅투자기관 1인당 4천만원)
3. 사업운영경비			
3.1 여비			
3.2 교육훈련비			
3.3 회계정산비			
4. 일반관리비			
4.1 일반수용비			
4.2 사무기기 구입			
4.3 사무비품 구입			

※ 천원 미만 절사